

후기고령자의료제도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란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75 세 이상의 어르신과 어떤 장애가 있어서 장애 신청을 하고 인정받은 65 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보험제도입니다.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을 제외하고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소요된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하면)

(1) 의사의 진찰을 받을 때 보험증 이용 등록을 한 마이 넘버 카드를 제시하면 본인부담이 10%, 20% 또는 30%가 됩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는 자비로 부담합니다).

※마이 넘버 카드에 보험증 이용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확인서가 발행됩니다.

(2) 가입자 사망시 장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가입하려면)

주민등록을 하고 입관법에 따라 결정된 재류기간이 3 개월 이상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류기간이 3 개월 이하인 사람도 입국목적 등을 고려하여 3 개월 이상 재류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활동」의 재류자격으로 입국·재류 중인 분들 중 진찰을 받는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후기고령자의료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주민등록 수속과 함께 시청의 고령자의료보험과 또는 각 지소·시민서비스센터·ACTA 니시노미야 스테이션(토일 및 공휴일 제외)에서 수속을 밟습니다.

(2) 필요한 것

부담구분증명서(효고현 이외 지역에서 전입하고 전 주소지에서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던 사람)

재류기간이 3 개월 이하인 사람은 앞으로 3 개월 이상 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재직증명서, 연수계획서 등)

직전의 건강보험이 직장에서 가입한 건강보험인 경우 건강보험의 자격상실증명서
여권(「특정활동」 재류자격으로 입국, 재류하는 사람)

○보험료에 대해서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할 때에는 주민이 된 달(입국한 달이 아닙니다) 혹은 75 세가 된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간보험료는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한 사람의 소득 및 세대 상황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됩니다.

입국 1 년째는 전년에 일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저한의 보험료가 부과되나 2 년째부터는 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연간보험료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7 월부터 이듬해 3 월까지 9 회 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 도중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익월부터 이듬해 3 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고령자의료보험과에서 고지서가 배달되면 납기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납부합니다. 신청을 하면 계좌 자동이체도 가능합니다.

재해, 실업, 도산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힘든 경우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기 힘든 경우 조속히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14 일 이내에 시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주소변경(니시노미야시 안에서 이사한 경우), 세대주가 바뀐 경우

(2) 전입

니시노미야시로 전입한 경우 시청 또는 각 지소 등에서 주민등록 수속을 밟고 나서 후기고령자의료제도 가입 수속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에 관해서는 니시노미야시청 시민과 또는 각 지소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출

니시노미야시에서 전출하는(출국하는 경우도 포함) 경우 전출일 전날까지(이사하고 14 일 이내에도 가능) 신고를 하고 전출증명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출신고와 함께 고령자의료보험과 또는 각 지소·시민서비스센터·ACTA 니시노미야 스테이션(토일 및 공휴일 제외)에서 후기고령자의료제도 탈퇴 수속을 밟습니다. 후기고령자의료피보험자증 또는 자격확인서(가지고 계신 분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하고 나서 14 일 이내에 전출증명서와 재류카드 등(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등록증명서 포함)을 지참하여 새 주소지의 시구청촌 관공서에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사망한 경우

후기고령자의료피보험자증 또는 자격확인서(가지고 계신 분만)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등을 잃어버렸거나 더러워진 경우 등

각각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수속은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

(1)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2) 재류자격이 없는 사람

(3) 단기체재인 사람

(4)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등

문의처	가입에 관해서	니시노미야시청 고령자의료보험과	0798-35-3192
	급여에 관해서	니시노미야시청 고령자의료보험과	0798-35-3154
	보험료 납부에 관해서	니시노미야시청 고령자의료보험과	0798-35-3110

※주 자세한 사항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